

(별표 6)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(제25조제1항 관련)

주무부처	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	수탁기관	
		부처의 장	위임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국가과학기술연구회
고용노동부	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법 제90조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	고용노동부장관	
문화체육관광부	대한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입하는 운동용구	문화체육관광부장관	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
농림축산식품부	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, 버섯재배용, 채유용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. 단,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한 물품에 한정한다	농림축산식품부장관	수입추천기관